

2021. 3.1.부터 적용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2021. 3.

[전주신흥고등학교]

목 차

【주요 수정 사항】

I. 추진 개요	1
II. 근거 법령 및 관련 지침	1
III. 기본 원칙	2
IV.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4
V. 교수·학습	13
VI. 출결 관리	15
VII. 학생평가	23
VIII.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7
IX. 향후 추진 계획	31
【참고 1~3】	32

【주요 수정 사항】

영역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I. 추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시기) 2020학년도 2학기 이후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II. 근거 법령 및 주요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항(수업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4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1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7.13.)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2-2판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895,202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수업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6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4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2.6.)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3판)(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757,2020.12.11.)
III.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 학교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IV.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 정상화(3월 시작, 수업일수 190일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 제시(소규모 학교의 기준 변경) 직업계고의 경우 선도기업에 한해 현장 실습 기간 단축(4주→1~2주) 우선 등교 대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기초 시간표 운영 권장 - 수업시간 5분 이내 감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기초 시간표 운영 준수 - 전체학생 수 400명 초과 학교 5분 이내 감축 한시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변경)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교육과-1613(2021.2.2.) 공문 참고 (2021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학교교육과-1613(2021.2.2.) 공문 참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유연화) 방안 제시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여 대면, 비대면,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p><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기준: 봉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자제 - 기존 감축 봉사활동 시수 유지 (3단계)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p><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기준: 봉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 봉사활동 권장 시수 자율 조정 추진 (3단계)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

영역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IV.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	<p><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1~2.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을 통해 봉사활동 사전 교육 실시 • (추가) 	<p><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1~2.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원격으로 실시 • 선플 달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4일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 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학교 자율 결정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함[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p><직업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 	<p><직업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 확대) 전북교육청 자체 제작 온라인 수업 콘텐츠 활용 및 제작 지원 확대 • (실습 꾸러미 지원)
V.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학생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수업으로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원격수업 연계를 통한 수업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쌍방향 소통 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습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소통 수업) • (맞춤형 피드백 제공)
	<p><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LMS 플랫폼 내 학급방,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
VI 출결 관리	<p><등교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칙 - 교육부 훈령 제343호 	<p><등교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칙 - 교육부 훈령 제36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중지 대상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생별 정의)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안내(제2-2판)에 따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생별 정의)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실시
<p><원격수업 출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 실시, 최종 7일(주말 포함) 내 확인 - (신설) - (신설) 	<p><원격수업 출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 실시, 최종 3일(수업일 기준) 내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접속불가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 시 3일) - 출결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영역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VI 출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p>
	<p><원격수업 출결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원격수업 출결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 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p><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내 학급방,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
VIII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p><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의 내용(또는 과제 내용)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원격수업(또는 과제)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 정량자료 입력은 가능)
	<p><원격수업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II)으로 평가 및 기재 가능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국·영·수·사·과 제외 - (고) 보통교과- 기초탐구교과(군) 제외/ 전문교과 I - 과학·국제계열 제외, 전문교과II·III - 모든 과목 	<p><원격수업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II)으로 평가 및 기재 가능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전 교과 - (고) 전 교과
	<p><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세특)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p>※ (신설)</p>	<p><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세특)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p>※ 위탁교육기관, 특수학급 및 순회교육 담당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포함</p> <p>※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연계 시 원격수업 내용(과제내용) 연계 기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체) <p>※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체) <p>※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연계 시 원격수업 내용(과제내용) 연계 기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 (추가) - (3단계) <p>※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단계) 대면·비대면(유선 포함)으로 실시한 교사의 관찰·평가, 상담 내용 - (3단계) <p>※ 실시간 조종례 및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p>

I 추진 개요

- (목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학생평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방안 마련
-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 특수학교의 경우 원격수업 관련 지침은 학생별 특성 및 교육여건을 고려해 별도 지침 적용 가능
 -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전·편입 및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과목,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등은 제외(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적용 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활용 방안) 학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부합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II 근거 법령 및 주요 지침

- 교육과정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교육과정 등), 제24조제3항(수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수업 운영방법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 2021학년도 개학에 따른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온라인학급 사전준비 안내(미래인재과-1644, 2021.1.27.)
 - 2021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등 원격수업 운영 기준(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1.1.28.)
- 출결,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65호)

【교육부 훈령 제365호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알림(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63, 2021.1.26.)

○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교육부, 2016.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4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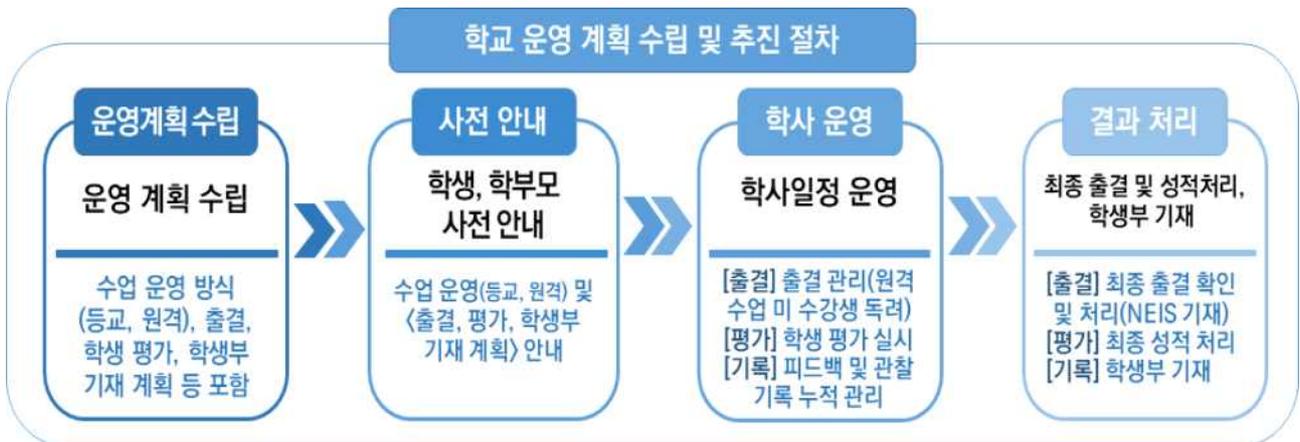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3판)(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10757, 2020.12.1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중대본, 2020.11.1.)

Ⅲ 기본 원칙

-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실시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학교 시설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수업계획을 사전에 마련
 - ※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
- 등교수업 시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
- 본 가이드라인 및 지역·학교 여건,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 **(① 운영 계획 수립)** 교과별 협의회 등에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의 출결·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학교 내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 등교수업은 기존 훈령·지침 등에 따라 수립·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발굴 및 정비
- **(출결) 원격수업 유형별·교과별 출결 확인 계획*** 수립
 - *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출결 확인 시기를 포함한 인정 기준, 출결 기록 및 관리 방법, 결석 사유 및 출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 기한 등 포함
- **(학생평가 및 학생부) 평가계획 수립,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관찰 및 피드백 제공 방안 마련, 누가기록 방안 마련 등**
- **(② 사전 안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운영 계획'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담임교사는 학급방 등을 통해 학생 관리
- **(③ 학사 운영)**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출결, 평가, 학생부 기재 운영·관리
 - ※ 원격수업 시,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선 확인 등 학습 관리 실시
- **(④ 결과 처리)**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시 누적 관리한 출결·평가 결과 최종 처리 및 학생부 최종 기재

IV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 밀집도를 준수하여 학사일정 정상화 및 등교수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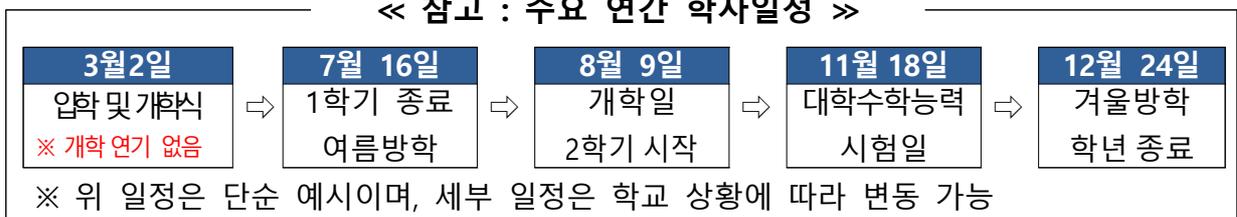
① 학사일정 정상화로 신학기 시작

- (학사일정)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하며,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정상운영 추진

* 개학 시기의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개학 형태(등교 또는 원격) 추후 결정

**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 참고 : 주요 연간 학사일정 >>



② [중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21학년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속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교 등교 원칙(교육부)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교육청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소규모학교 기준 초과 학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 등교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밀집도 기준 예외	①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3단계)				
	②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은 소속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특수학교(급)은 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③ (소규모학교***) 전교생 300명 이하 학교,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 수업 원칙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400명 초과 학교, 400명 이하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초과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학교 밀집도 원칙 준수

*** 소규모학교: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전교생 전면 등교,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 (탄력적 학사운영)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감염병 상황,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고려해 자율·탄력적 운영 가능
 - ※ (예시) 상황 악화 시 분반, 과대학교 오전·오후반 운영 등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학교(급) 내 밀집도 최소화
 - 교내 확진자 발생·지역 감염병 상황 악화 등으로 원격 수업 전환 시, 등교수업일 조정 매뉴얼에 따라 방역당국·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 직업계고의 경우 선도기업에 한해 현장실습 기간 단축(4주→1~2주)

3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 확대

- (원칙)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수업일 확보
- (우선 등교대상)

« 대상별 등교수업 확대 취지 »

▶ (진로·진학) 상급학교 진학·취업 등 다양한 진로·진학 준비기간이 필요한 고3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등교원칙 유지

■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1 기본 원칙

-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생 기초학습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연계되는 교육과정 운영
 -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수업 활동 및 체계적인 수행평가 실시 등의 계획 수립 운영
 -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 등의 발생으로 실시되는 전면 원격수업 체제 운영 계획 마련
- (밀집도 최소화) 등교수업 시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 방안 및 출입구, 특별실, 급식실,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 장소의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

- 학년별·학급별 등하교, 수업, 급식 시간 등 분리 운영 권장
- 등하교 출입구, 급식실 이동 경로 등 분리 운영 권장
- 도서관, 과학실 등 특별실 공동 사용 최소화
- 건물이 여럿인 경우 해당 학년(학급)이 있는 건물 내에서만 활동 권장
※ 공간 분리 등 확진자 발생시 전체 확산 가능성 최소화
- 쉬는 시간 확보 등 교원과 학생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밀접 접촉 최소화) 등교수업 시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 학생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의

-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함
*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및 '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침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준수
- 모둠활동 운영 시,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자제

- (개인위생 교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

- 창문 수시 개방, 개인책상 및 개인물품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발현 시 바로 말하기 등

② 수업 시간표 운영

- 학급별 기초 시간표 운영 준수 [등교수업, 원격수업 모두 해당]
 - 차시별 교과 담당 학급의 학생 관리 및 피드백 실시
 - 출결확인 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원격수업 병행시 학년 간 동일시간 교사 겹침 금지
 - 순회교사 교과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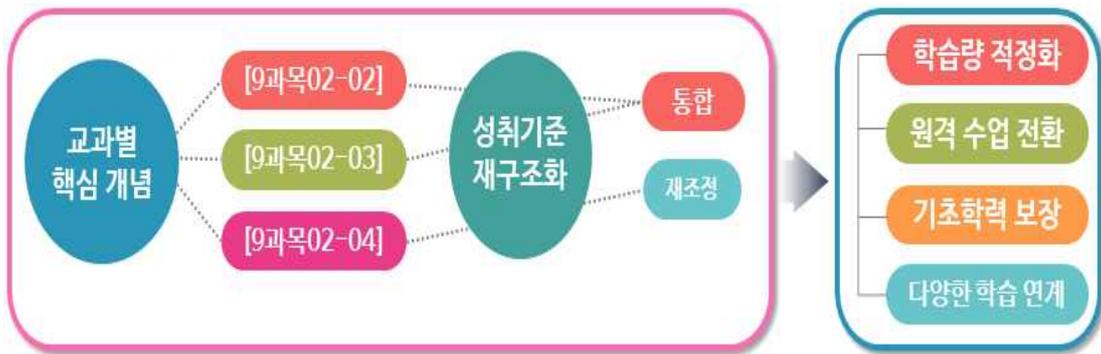
※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적용 시 고려사항

- ☞ (운영대상) 학교급별·학교 규모별로 학생 밀집도 및 이격거리 확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 후 결정
- ☞ (기준) 수업 시간 한 차시 기준 시량은 **고등학교 50분이 원칙임**
※ 다만, **등교학생 수* 기준 300명 초과 학교**에서 방역과 급식 시차 등 **부득이한 경우 5분 이내 감축 한시적 허용(별도 안내 시까지)**, 5분을 초과하여 감축한 경우 감축된 시간에 대한 보강 방법은 학교에서 결정(내부결재)
* 등교학생 수 : 전면등교 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 운영 시 실제 등교하는 학생 수
- ☞ (고려사항)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학운위 심의, 학부모의견 수렴 등)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

3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 원격수업 전면전환 등교·원격수업 병행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수업·평가 예시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교육과-1613\(2021.2.2.\)\]](#) 공문 참고
- ※ 중등 창의적 체험활동 및 12개 교과(총 13종) 개발

« 성취기준 재구조화 방안 및 활용 예시 »



- (교사)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다양한 수업운영*에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역량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확대
- ※ 주제통합수업,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참여수업 및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 (학생) 학생 학습부담 경감, 학생 참여 수업 활성화를 통해 흥미와 목표를 갖고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연계·구현

« 성취기준 재구조화 유형 및 활용방안 »

현행 성취기준	성취기준 재구조화		재구조화 성취기준 활용	
			교수·학습	평가
등교수업 상황을 기반으로 개발	통합	2~3개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차시 감축 및 다양한 학습 연계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 사례, 탐구 활동·내용에 따라 블록타임제 활용,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병행 등	과정 중심 평가, 수행평가 중심, 학습내용의 최소 성취기준과 목표, 창의력 및 사고력 함양, 학습동기 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시행
	재조정	성취기준 기능, 내용요소 재조정을 통해 원격수업 전환 및 상호작용 촉진		
	유지	기본적인 성취기준은 유지하여 학습결손 예방		

- (2021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할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 조정 및 원격수업 가능여부 안내
 - 운영 방법 :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운영
 - 주제간 통합 운영 및 관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4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교과 및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통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운영
 - 유의미한 비대면 봉사활동, 온·오프라인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및 소규모 그룹 체험 등을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요약)>

구분	1 ~ 2.5단계	3단계
자율활동	•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
동아리활동	•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	•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
봉사활동	•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 봉사활동 권장 시수 자율 조정 추진 ※ 변경된 권장 시수 등 운영 지침 확인	•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
진로활동	•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 >

- (자율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 활동 실시
 -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 대면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참석인원, 행사 공간,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 학급활동(반장선출, 담임선생님과 자체활동)안전교육성교육생존훈련대피훈련 등
 - 대규모 단체 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조치를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 참여

※ 수학여행, 수련활동, 학교축제 등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 지양

○ (동아리활동) 대면·비대면 방식, 혼합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등
- 가급적 학교 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 확보

○ (봉사활동)

- 필요 시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하고, 봉사시설(장소), 봉사내용 등을 검토하여 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 계획서」 학교장 사전 승인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에 안내

- 외부기관 방문 자제,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하며, 선플달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 활용 가능

※ 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민주시민교육과-472(2021.1.12.)]

※ (알림)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도움 자료 알림 [민주시민교육과-691(2021.1.15.)]

○ (진로활동)

-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유형 및 방법*, 참석인원,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진로체험유형 강연대회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교체험형, 진로캠프형

- 숙박형 프로그램은 자제하고, 가급적 비숙박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
-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등교수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

※ (예시) △온라인 진로교육활동 사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https://mentoring.career.go.kr>)을

활용한 진로멘토링 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온라인 진로상담(<https://career.go.kr>),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https://yeep.kr>)을 활용한 창업동아리 활동 등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공통) 비대면(원격수업)이 가능한 활동(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 ※ (원격 동아리활동 예시) 가상 박물관체험(VR, 영상, 사진자료 등)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우리역사바로알기 역사동아리 활동 등

5 기타

-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30일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함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61쪽, 고등학교 58쪽

- (교내대회)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후 실시 가능
 -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단체 활동으로 구성된 교내 대회의 경우 일정거리 확보 등 준수
 - 비대면으로 교내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 * 쌍방향 화상 수업, 학생의 수행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
 - ※ 비대면 대회 시, 학생의 활동 결과물 등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학생 상담 및 치유)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

※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 지원(위기지원팀: 239-3457)

- 불안,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연계
 -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위(Wee)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지원
-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공감 교육 실시

V 교수·학습

1 기본 원칙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 >

- (교과 수업)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
- 등교수업 시 토의·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
- 주제구성, 학습자료 준비, 공동콘텐츠 제작 등은 동학년 동교과에서 협의 및 제작 가능
- (방역 강화) 학교 내 이동 수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

2 학생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수업으로 연계

- (원격수업운영 계획 수립) 학교 여건별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다양한 원격수업 운영 방식, 질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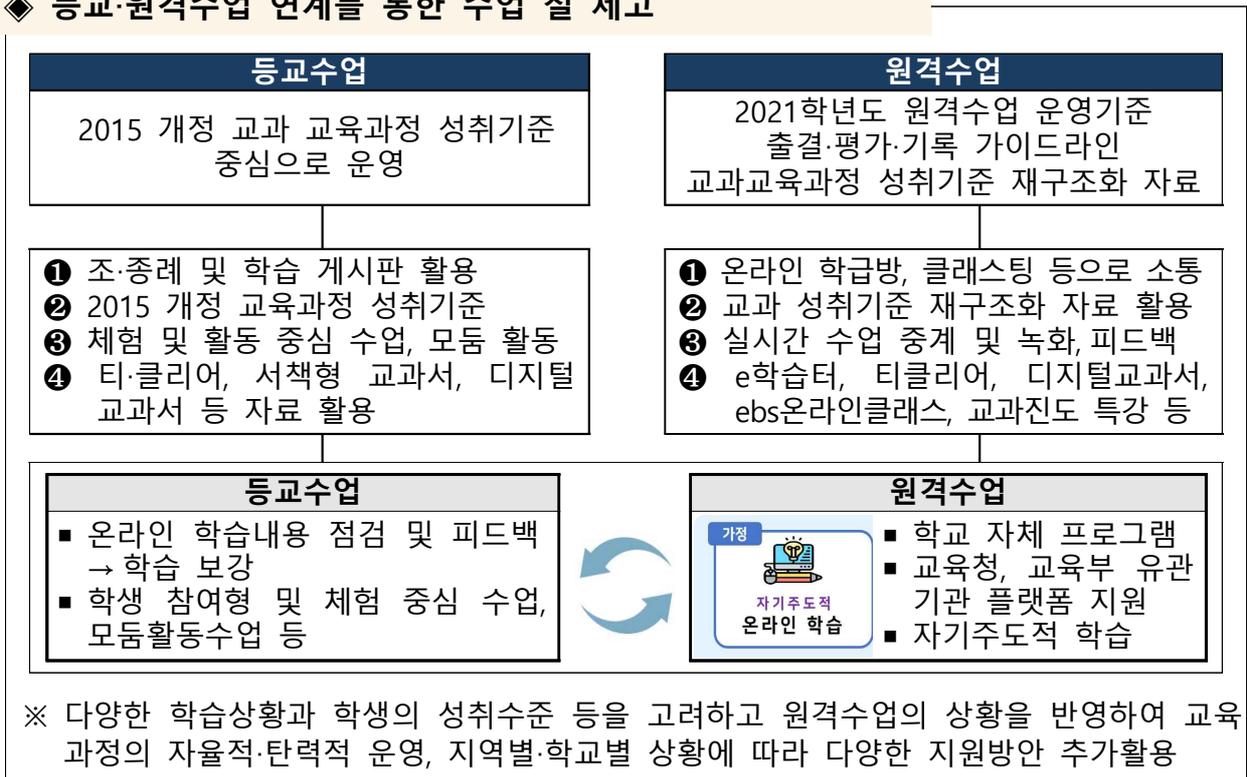
- (혼합수업 운영) 기존 교실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등교수업-원격수업 간 혼합 수업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방식 도입 권장

혼합수업 모형 예시

구분	세부 모형 예시
1. 원격수업 간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활용수업(예습)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 콘텐츠 활용수업+과제수행형 원격수업+쌍방향 원격수업
2. 등교수업 + 원격수업 간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예습학습) + 등교수업(피드백, 프로젝트학습 등) 모형 • 등교수업(핵심개념학습) + 원격수업(확인과제학습.피드백) 모형

- (등교·원격수업 연계를 통한 수업 질 제고) 교과목별 성취기준 재구조화로 등교·원격수업 연계를 통한 수업 운영으로 학생의 흥미·역량 제고

◆ 등교·원격수업 연계를 통한 수업 질 제고



3 쌍방향 소통 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습 내실화

- (쌍방향 소통 수업)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하여,

과제 수행에 대한 개별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효과성 제고

* 실시간 쌍방향,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의 혼합형 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포함

-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불참 시, 학생 대상 대체학습을 당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 최대한 보장
- 학생의 학습·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조·종례를 지속 운영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교사-학부모 간 소통 강화

○ (맞춤형 피드백 제공) 수업 중 형성평가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참여도·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인별 피드백 제공 활성화

- 학습동기 독려 및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활성화
- 개별 교사가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등교·원격수업 전후로 대면, 유선,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학생 피드백 실시
- 원격수업 진행 시에는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한 토의·토론프로젝트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활성화

VI 출결 관리

[등교수업]

1 기본 원칙

- ❖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 (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

「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p><유의사항></p> <p>-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p>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p>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p> <p>※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p>	<p>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참고사항</p> <p>▶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p> </div>	<p>[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hr/> <p>[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대상 학생별 정의 】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16쪽 참고)
 -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원격수업]

1 기본 원칙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 (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는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마감)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예: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실시간 조·종례)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관리와 별도로 운영(NEIS에 반영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종례 출결 관리 방법(중등): 조회(종례)는 '결석'처리 또는 1교시(마지막 교시) 불참자의 '지각(조퇴)' 처리 시에만 결과 처리

【실시간 조·종례 운영】

-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
 - * 화상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또는 학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룹대화방 등
- (내용) 출결 및 건강상태 확인,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
-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 파악

- (유의사항)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2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 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예시) 학생 모둠활동 등 과제중심 원격수업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기록'이 아닌 '과제수행 여부'로 출석 확인 가능
-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
 - ※ 단, 출석 확인(인정)기간*은 학교에서 임의 변경 불가(전국 공통)
 -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당일, 이외 유형: 원칙적 당일(최종 3일 내)
-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내 학급방,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
 -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출결기록 관리 철저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 확인)		
	교사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대체 학습	증빙 자료
실시간 쌍방향	○	○	○	○	○		○	○	○
콘텐츠 활용		○	○	○	○	○	○		○
과제 수행		○	○	○	○	○	○		○
확인(인정) 기간	당일***	원칙적으로 당일(최종 3일(수업일 기준) 내)							

* e학습터, ebs클래스,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MS팀즈 등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접속불가 사실 소통(대체학습 부여) / 이외 유형: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강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접속 불가 등의 사유로 대체학습을 부여한 경우 3일(수업일 기준) 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출결 관련 개선 사례>

- (실시간 화상 수업) 학생들의 실시간 접속 현황 및 수시 참여 확인요청 기능을 제공하고 수업 종료 후 수업참여 결과(확인요청 응답 횟수, 접속 시간 내역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콘텐츠 및 과제중심 수업) 각 과목의 학생별·강의별 수강 이력 확인 기능 제공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확인·인정 방법)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플랫폼, 별도 학급방)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참여)여부 확인(인정)
- (대체 확인 방법)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체학습을 제시(당일)하여 그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확인·인정
 - ※ 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학습관리시스템(LMS) 진도율 이수기준은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결정
 - ※ ‘출결 처리’를 위한 이수 기준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미충족 시 ‘결석(결과)’ 처리)
 - ※ (참고-이수기준)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80%, ▲ e-학습터: 60%, ▲ 온라인 수업(전·출입 등에 따른 미이수과목, 도서·산간 지역 미개설 과목): 70%

- 콘텐츠 활용 기간(출석 확인 기간)은 **3일(수업일 기준)내로** 설정·적용
- (대체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기타) 과제 인정 기준(인정 수준, 분량)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
- 기타 유형 수업
 - (확인·인정 방법)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

3 학생 관리

-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 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출결증빙자료는 9쪽 참조)
 -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장기결석 학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VII

학생평가

1 기본 원칙

- 등교수업,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 (지필평가) 등교하여 실시, (수행평가) 등교수업 또는 원격수업에서 실시
 - ※ 수업 중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습 수준을 확인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참여도·태도 등을 관찰하여 학생 상담·지도에 적극 활용
-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학교 자율 결정으로 하고,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함
 - ※※ 평가계획 수립·변경의 경우 평가 실시 전 반드시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인정점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2 지필평가

- 학년(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희 교실 활용, 학년별 고사기간*, 시험시간 오전/오후 분리** 등 탄력적 운영

(예시) ※ (월,화) 1학년 1차고사, 2,3학년 원격수업 *학년별 순차적으로 이틀씩 실시
※※ 오전 1학년 1차고사, 오후 2학년 1차고사, *3학년은 별도일 실시

○ 지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완화

-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최소 반영 비율을 70%에서 40%로 감축함.(시행지침 1쪽 '방침 6' 관련) → 학교는 지필평가 1회에 따른 결시자 인정점 문제 등 충분한 고려 필요, 코로나19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가 기회(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 참고.
- 고사실 2인 감독 배치 학급당 기준 인원(18명)을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함. 즉 학생 수가 18명 이상이지만 1인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 감독 배치 가능 → 시험 감독 보조는 학부모로 한정됨. 대학생 봉사활동 등 금지는 유지됨.(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8쪽 '4' 관련)
-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등 재시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재시험 시행 여부를 판단함. → 학교는 재시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보안관리를 포함하여 지필평가 출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시행지침 '별지15' 관련)
- ※ 시행지침 완화는 학교가 지필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임. 지필 평가는 학교장 시행 시험으로 학교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

- 지필평가(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비상 시 시험연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 귀가 조치 방법, 결시자의 성적처리 등을 평가 시행 전 학생·학부모에게 공지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시행지침 '별지10'의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및 예시'를 반드시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고의적 결시를 예방하고, 학교는 1차·2차고사의 문항 변별력·난이도 유지(고사별 유불리 발생 최소화)에 특별히 유념해야 함

○ 결시생 성적처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예시)**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또는 산출 기준 마련
 -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별지10' 참조)
 -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3 수행평가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유형Ⅰ),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Ⅱ)으로 평가 가능(유형Ⅱ: 2021년 모든 교과에 허용)
 - ※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
-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교과별 평가계획 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 방침

- (1~2.5단계)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가능
- (3단계)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평가 미실시)하는 PASS제 적용 가능, 중3·고교는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 산출
 - ※ (지필평가)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수행평가)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평가 가능

【 중학교 1·2학년 PASS제 적용 기준 】

- ▶ 전국 평균 수업일수 1/3 시점에 PASS제 적용 여부 결정(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 학생이 진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수(P) 처리하고,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하여 맞춤형 피드백 제공 활성화

*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PASS제는 교육청 단위로 적용(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 별 적용 불가)

5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석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 예시이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VIII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 기본 원칙

-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의 내용(또는 과제 내용)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원격수업(또는 과제) 정성적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 정량자료 입력은 가능)
- ※ 각 항목의 기재 방법 등은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용
- (기재 내실화)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 예)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하여 운영,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

2 운영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 >

- (교과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 기재요령(중 82쪽, 고 85쪽) 참조(예: 학교폭력 예방교육 2회(3.25. 9.3), 입학식(3.2) 등)
 -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수상경력)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내대회를 실시한 경우(11쪽 참고)에 한하여 기재 가능
 - ※ 단, '수상경력'의 기재 방법 등은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용(수상경력 외 다른 항목에 참가사실 등 기재 불가)
- (인적·학적·출결) '21. 3. 1.부터의 사항을 기재

- ※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특기사항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 불가피하게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 내부결재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필요
- ※ 고등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출결 특기사항에 일괄 입력(상세 기준 및 방법은 [참고3] 참조)

- (전·출입 시) 원격교에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학생의 출결상황 및 활동내용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출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 교과 세특,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교사가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 가능토록 허용

※ 3단계 기준 전면 적용 확정시에도 1~2.5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원격수업 내용 기재 예시

- ❖ 교과세특: 원격수업을 통해 창의성에 대한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가능성 정도와 의견을 표현하는 구문을 연습함.
- ❖ 자율활동: 원격수업 중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교육(2021.06.10., 2021.07.08.)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방안 및 학생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학습함.
- ❖ 동아리활동: (역사탐구반)(00시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함.

- 수상경력, 인적·학적사항, 등교수업 이전 활동(독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격증, 진로희망사항 등)에 대한 작성 기준은 1 ~ 2.5단계와 동일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3단계 적용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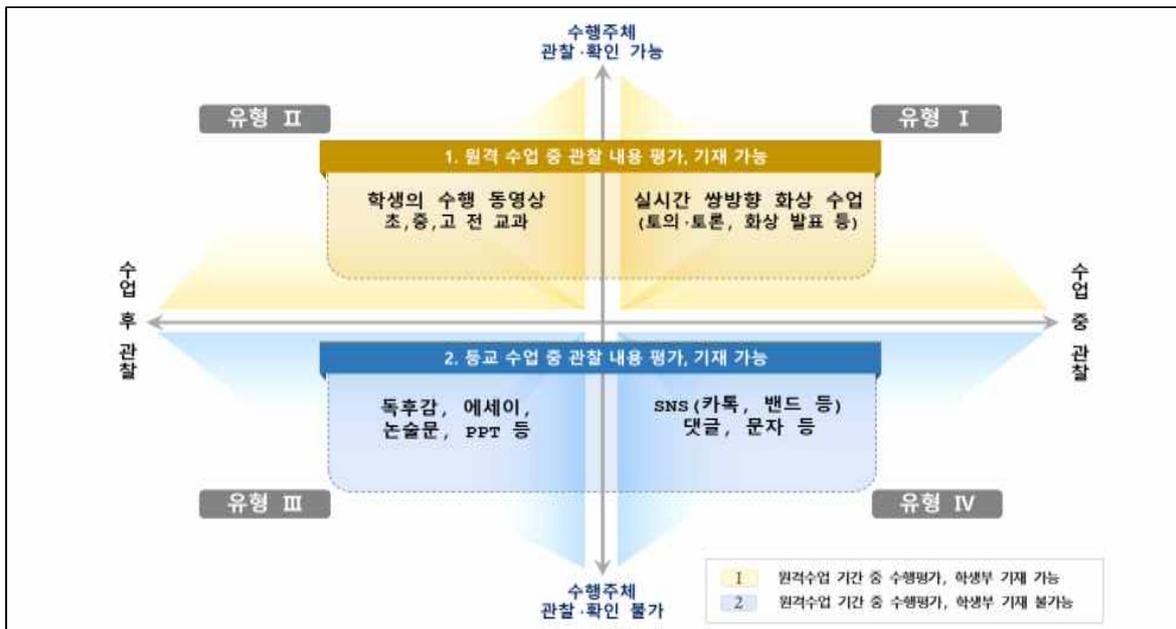
- ▶ 한 학기 내에서 전국 평균 수업일수 1/3 시점에 3단계 기준 적용 여부 결정(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 3단계 기준 적용 여부는 학기별로 결정하며, 해당 학기 내에서만 유효함
- ▶ 1, 2학기에 학생부 작성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예: 1학기: 1단계, 2학기: 3단계), 각 영역의 문두에 괄호로 학기 구분(예: (1학기))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함

3 원격수업 학생평가 · 학생부 기재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적용 방안(안)】

- (결정 주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기본 방향) 한 학기 전국평균 수업일수 1/3을 기준으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3단계 방안 적용 여부 결정(결정 후 해당 학기 내 재변경 없음)
- * 3단계 방안 적용 여부는 학기별로 결정하며, 해당 학기 내에서만 유효함.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유형 I) 수업 중 관찰·확인 가능형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예시 1)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 시 실시한 토의·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 시 실시한 발표 수행평가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유형 II) 수업 후 관찰·확인 가능형*

※ (2020년) 일부 교과만 허용, (2021년) 모든 교과 허용

-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식재료 다듬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조리 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유형 III)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

- 단, 등교수업(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등교수업에서 ‘비평의 기법’에 대해 지도하고,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확인한 이해도,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중 교사가 관찰·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유형 IV) 수업 중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실시간 채팅, 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

- 단, 등교수업(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3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

구분	고등학교
----	------

구분		고등학교	
평가	1~2.5 단계	•(학기말 성적) 산출	
	3단계	•(지필·수행평가) 선택 가능	
교과 세특	1~3 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의 모든 과목
		기재 내용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 위탁교육기관, 특수학급 및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포함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연계 시, 원격수업 내용(과제내용) 연계 기재 가능 ※ (3단계 시)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 원격 수업 내용(포함 가능)
창·체	1~2.5 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정량자료 및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 관찰 가능 수업시간 확보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연계 시, 원격수업 내용(과제내용) 연계 기재 가능
	3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정량기록 + 교사 관찰·평가 내용 + (원격수업 내용) ※ (가능할 경우) 학생 상호평가 내용
진로활동	정량기록+원격수업 내용+대면/비대면(유선 포함) 진로상담 결과		
행·특	1~2.5 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대면·비대면(유선 포함)으로 실시한 교사의 관찰·평가, 상담 내용 ※ 실시간 조종례 및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3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대면·비대면(유선 포함)으로 실시한 교사의 관찰·평가, 상담 내용 ※ 실시간 조종례 및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필요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

IX 향후 추진 계획

-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가 대책 마련·안내

참고1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등교 시 출결 관련)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일본)</u>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앙방역대책본부(일본) 설치·운영</u> · 국외 환자 유입차단, 검역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u>(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u>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앙방역대책본부(일본) 운영 지속</u> · <u>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u> ·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 <u>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u>(지자체)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u> - <u>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u>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정부적 총력 대응</u>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23.)

참고2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중대본, 11.1.)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p>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p> <p>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p> <p>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p> <p>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p>※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1000명 이상 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p>※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p>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기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 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 관리 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 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 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 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참고3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안내

□ 추진 배경

- 휴업 및 등교수업의 원격수업 전환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반영한 상급학교 진학자료 정비
-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도모
 - ※ 각 고교에서 운영한 원격수업 일수의 추가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대입 전형 운영 도모

□ 주요 내용

- (대상)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 (내용)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 ※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학교의 운영 일수’ 입력
- (처리 기준) 학급단위* 이상(학년, 학교)을 대상으로 하루 시간표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운영·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입력(사례1, 2)
 -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포함
- 단, 하루 시간표의 일부(오전·오후)만 원격수업으로 수강한 경우(사례3)와 개인단위 등교중지 등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사례4)은 미포함
 - ※ (예시)

	내 용	원격수업일수 포함여부
사례1	홀수학급 등교수업(하루 종일), 짝수학급 원격수업(하루 종일)	짝수학급만 원격수업일수 포함
사례2	홀수번호 등교수업(하루 종일), 짝수번호 원격수업(하루 종일)	짝수번호만 원격수업일수 포함
사례3	하루 중 오전 등교수업, 오후 원격수업	미포함
사례4	등교수업 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별도 제공	미포함

- (처리 방법)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일괄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에 대해 해당 학급의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입력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

*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학급별 '일괄입력' 기능 활용

- 단, 고등학교 3학년은 대입전형자료 생성(수시·정시) 시 학생부 마감일(생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필요

※ 업무처리 경로: [학적] - [출결관리] - [출결특기사항등록] - [일괄입력]

※ 위탁기관 위탁 학생 또한 '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 2021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 처리 방법

- (진급 시) 2021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처리 방법

- (대입) 대입 전형자료 생성 시 수시 및 정시 자료 생성 기준일(별도 안내 예정)을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또는 수정 입력
- (졸업 시) 2021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 일수로 수정 입력

- (학적변동자) 전출입, 재·편입학, 학업중단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전출입) 원적교(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

*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 까지)”(전출교에서 입력),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전입교에서 입력)

※ 학생 전출 시,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

- (재·편입학) 재·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진급, 졸업, 대입전형 자료 생성 시)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

※ 2020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1학년도 재·편입학 한 경우, 2020학년도 학업중단 이전과 재·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중복기간 미 삭제)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학업중단 일까지), 원격수업일수 00일(재입학/편입학/복학 이후)

- (학업중단)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